

법률사무처리규칙

제정 2013. 10. 31.
개정 2016. 05. 03.
개정 2018. 08. 06.
전부개정 2021. 07. 16.
개정 2022. 05. 02.
개정 2024. 07. 30.
개정 2024. 09. 06.
개정 2026. 07. 2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법률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법률사무 처리에 관하여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규칙은 법률고문 또는 소송대리인 선정에 관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사무처리규칙」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09.06.>

1. “법률사무”란 진흥원의 입법대응 지원, 소송, 법률자문, 법률고문 및 소송대리인 선정 등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2. “입법대응”이란 진흥원 업무와 관련된 법령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입법 추진 및 의견개진 활동을 말한다.
3. “소송”이란 진흥원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모든 종류의 소송(가처분 등 일체의 신청사건, 화해, 조정, 중재 등을 포함한다)과 진

홍원의 임직원이 진홍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피의자로 입건되거나 기소된 형사사건을 말한다.

4. “법률자문”이란 진홍원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계약서 작성이나 법적 해석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5. “법률고문”이란 진홍원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모 및 심사·평가 절차를 거쳐 위촉한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을 말한다.
6. “소관부서”란 소송사건 또는 법률자문의 발생의 원인이 되거나 입법대응과 가장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는 각 부서를 말한다.
7. “법무 담당부서”란 진홍원의 소송, 법률자문, 법률고문의 선정 및 운용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8. “원내변호사”란 「변호사법」 제4조에 따라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 보유한 법무 담당부서 소속 직원을 말한다.
9. “소송보조자”란 제소 또는 응소 시 소송발생의 원인이 되는 업무를 담당할 직원 또는 그 직원으로부터 업무를 인수한 직원을 말한다.
10. “법무관리 시스템”이란 진홍원의 소송 및 법률자문 업무에 관한 정보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등록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1. “감사 담당부서”란 「감사규정」 제13조제1항의 감사 지원부서를 말한다.

제4조(시스템 관리) 법무 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무관리 시스템에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소송 관련 사항
 - 가. 사건번호, 소송당사자 정보 등
 - 나. 법원에 제출한 서면
 - 다. 소송의 진행경과
 - 라. 판결문
 - 마. 기타 소송과 관련한 사항
2. 법률자문 관련 사항
 - 가. 법률고문 등에게 발송한 법률검토 요청서
 - 나. 검토의견서 등

다. 소요시간 등

제2장 입법대응

제5조(입법대응 원칙) 진흥원의 입법대응 담당부서의 장 또는 소관부서의 장은 법무 담당부서의 장과 서로 긴밀히 협력하여 입법대응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입법대응 업무) ① 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중 진흥원 업무와 관련된 제·개정안에 관한 정보를 수시로 수집하여 입법대응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4. 「콘텐츠산업 진흥법」
5. 「영상진흥기본법」
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7.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8. 「지역문화진흥법」
9.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10.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11.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12. 그 밖에 진흥원의 업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법률

② 진흥원의 입법대응 담당부서의 장 또는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제·개정안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법무 담당부서의 장 또는 법률고문에게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입법대응 담당부서의 장은 소관부서의 장과 법무 담당부서의 장의 의견을 검토·조정하여 소관기관에 진흥원의 의견을 제출한다.

제3장 소송업무

제7조(소송업무의 이관) ① 소관부서의 장은 제소 또는 응소하여야 할 업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에 기재하여 이를 법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이관한다.

1. 당사자 및 소송목적물의 표시
2. 판결을 구하는 내용
3. 제소 및 응소사유
4. 사건 경과
5. 소송보조자
6. 기타 소송에 필요한 참고사항

② 소관부서의 장은 불변기일 등 시기를 놓쳐 진흥원이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이관에 앞서 법무 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상소장 제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이관 절차를 취한다.

제8조(제소전 신청사건 등) ① 소관부서의 장은 장래 강제집행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송목적물 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보전조치(가압류, 가처분)를 취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직접 대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관부서의 장은 필요시 법무 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건을 법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이관할 수 있다. <개정 2024.09.06.>

1. 진흥원이 고소·고발하는 사건
2. 형사피의·피소 사건
3. 제소전 신청사건(가압류, 가처분, 제소전화해 등)
4. 재판의 전치절차인 쟁송절차(행정심판 포함)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안소송과 동시에 제기하는 신청사건은 법무 담당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제9조(소송대리인의 선임) ① 착수금이 2천만원 이하(부가세 별도)인 사건의 경우에는 법률고문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률고문이 아닌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4.09.06.>

1. 법률고문이 이익충돌 등으로 소송대리를 할 수 없는 경우
2. 사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원내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3. 외국법이 준거법이거나 국내법원에 재판관할이 없는 경우
4. 위촉기간이 만료된 법률고문을 하급심에 이어 상급심에서 다시 선임하는 경우
5. 진흥원과 이익충돌이 없는 다른 국가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동당사자인 사건에서 공동으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6. 그 밖의 사유로 원장이 승인하는 경우

③ 착수금(부가세 별도)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사건의 경우 진흥원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소송대리인을 공모하여 경쟁방식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④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심급별로 소송위임계약(별지 제1호 서식)을 체결하고, 소송위임장(별지 제2호 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소송대리인과 상호 협의하여 계약의 내용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4.09.06.>

제10조(소송비용) ① 소송위임에 따른 보수(착수금 및 사례금)에 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소송을 수임한 변호사에게 지급할 보수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 보수 규정」(법무부 훈령)을 준용한다. 다만, 소송의 내용이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고 「변호사 보수 규정」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보수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09.06.>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 보수 외에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비용법, 민사소송등인지법이 정하는 인지대, 송달료, 검증료, 감정료 기타 소송수행 상 소요된 비용 등은 그 실비를 지급한다.

③ 진흥원에 유리한 소송을 위하여 외부인이 증인, 감정인으로 출석하는 경우에는 관련 내규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법무 담당부서의 업무) ①법무 담당부서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소송 업무를 이관받은 때부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소송대리인 선임
 2. 소송대리인 지휘, 감독
 3. 판례, 법리검토 및 대응논리 개발
 4. 소송대리인이 작성한 소장, 준비서면, 신문사항 등 일체 문서의 검수 및 확정
 5. 기일변경 등 소송절차 관련 동의 여부 확인
 6. 상소, 소취하, 조정결정 등에 대한 이의여부에 대한 의견제시
 7. 소송기록 시스템에서 소송기록 등의 등록 및 관리
 8. 판결확정증명원 발급 및 소송비용액확정신청
- ② 법무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의 진행경과를 소관 부서의 장에게 수시로 공유하여야 한다.

제12조 (소관부서의 업무) ① 소관부서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소송업무를 이관한 때부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소송보조자에 대한 관리, 감독
 2. 소송에 필요한 자료의 조사·수집·작성 및 사실관계 정리
 3. 소송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관계 및 증거에 관한 확인
 4. 소송비용 및 확정 판결금의 지급 또는 회수, 구상권 행사
 5. 기타 소송수행에 필요한 업무
- ② 소관부서의 장은 소송에 의한 해결이 필요한 사항을 지체 없이 법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이관함으로써 진흥원이 입을 손해가 확대되거나 분쟁이 장기화되는 상황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13조(소송보조자) 소송보조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1조제1항 각 호의 업무 보조
2. 소송 관련 회의 참석
3. 변론기일 등 법원이 지정하는 기일에 참석(다만 법무 담당부서의 장이 소송보조자의 참석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기타 소송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14조(소송진행 중의 조치) 법무 담당부서의 장은 진행 중인 소송사건이 판결 이외의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 및 소송대리인과의 협의를 거쳐 원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제15조(상소의 포기) 법무 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의 결재를 받아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1.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추어 승소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
2. 상소에 의한 경제적 이익이 상소의 비용에 비하여 경미한 경우

제16조(판결확정에 따른 조치) ① 법무 담당부서의 장은 이행청구의 승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판결 내용에 따른 채권의 보전 및 행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5.2.>

② 법무 담당부서의 장은 승소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하고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른 채권의 보전 및 행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5.2.>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송상대방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5.2.>

1. 소송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면책 등 경제적 어려움이 소명된 객관적 자료가 제출된 경우로 한정함)
2. 회수해야 하는 비용이 소송비용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적은 경우
3. 상대방이 사망, 실종, 행방불명, 폐업 등의 사유에 해당하여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④ 법무 담당부서의 장은 판결확정에 따른 조치를 완료한 경우 소관부서의 장에게 소송 및 조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5.2.>

[전문개정 2024.09.06.]

제17조(패소판결의 원인규명) ① 법무 담당부서의 장은 전부패소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여 감사부서의 장과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무 담당부서의 장은 전부패소한 원인이 제도의 결함으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되는 때에는 제도개선 또는 내규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18조(변호인의 조력 등) ① 임직원이 진흥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수사기관에 형사입건되어 조사를 받는 경우 또는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는 경우 진흥원은 해당 임직원의 요청에 따라 변호인의 조력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인의 수사참여 등 지원은 「변호사법」에 따라 개업 중인 원내변호사 또는 법률고문에 한하며, 법률고문을 통한 지원은 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임직원이 진흥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법원, 수사기관 또는 관계 기관에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경우에는 법무담당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4장 법률자문

제19조(법률자문 요청) ① 소관부서의 장은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법률전문가의 의견 또는 판단이 필요한 경우 법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3호의 법률검토 요청서를 작성하여 법률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법무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법률문제가 아니라 단순한 내규의 해석, 정책적 의견 등을 구하는 것이라면 그 이유를 붙여 해당 법률검토 요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제20조(법률고문에 대한 법률자문) ① 법무 담당부서의 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법률검토 요청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법률고문에게 법률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법무 담당부서의 장은 소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법률

검토 요청서의 내용을 수정 또는 추가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경우 법무 담당부서의 장은 법률고문에게 원칙적으로 5일 이내에 회신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의 경우 법무 담당부서의 장은 사안의 난이도, 전문성, 비용 등을 고려하여 법률검토를 의뢰할 법률고문을 선정하여야 한다.
- ⑤ 법무 담당부서의 장은 법률검토를 의뢰한 날로부터 검토의견서 등을 수령한 날까지 법률고문의 법률검토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법률자문료가 과도하게 청구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 ⑥ 법무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의 의뢰에 따른 법률고문의 검토의견서 등을 검수하고 필요시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⑦ 법무 담당부서의 장은 제6항에 따른 검수를 완료한 경우 소관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검토의견서 등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21조(법률고문 아닌 자에 대한 법률자문) ① 제2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무 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률고문이 아닌 국내외 변호사 등에게 법률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 1. 해외비즈니스센터 업무 등 외국법이 적용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이 경우 소관부서의 장은 법무 담당부서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법률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 2. 법률고문의 검토의견이 질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하거나 이견이 있어 다시 검토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 3. 법률고문 아닌 변호사 등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원장이 사전 승인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법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제20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제22조(법률자문료) ① 법률자문료의 계산 및 지급방식은 제24조제1항에 따라 법률고문 위촉 공모를 하기 전에 원장의 결재를 받아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법률자문료의 계산 및 지급방식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법률고문 아닌 국내외 변호사에게 법률검토를 의뢰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③ 법무 담당부서의 장은 소관부서의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한 자문료의 한도를 정하여 법률고문에게 법률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22조의2(법률자문에 관한 특례) ① 감사 담당부서의 장은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접 법률고문 또는 법률고문이 아닌 국내외 변호사 등에게 법률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감사 담당부서의 장은 제4조제2호, 제20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22조제2항을 준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09.06.]

제23조(원내변호사의 법률지원) ① 소관부서의 장은 계약체결을 위한 협상 등에서 원내변호사의 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법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원내변호사의 현장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서 법률적 조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법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원내변호사의 회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장 법률고문의 위촉

제24조(법률고문의 자격) ①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법률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판사·검사·변호사의 경력이 10년 이상이면서 개업 중인 변호사(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기간을 포함한다)
2.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3. 「변호사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4. 「변호사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5.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
6. 「대한변호사협회 회칙」에 따른 합동사무소

- ②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변호사는 법률고문으로 위촉될 수 없다.
- ③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퇴임한 변호사가 재직시 부패행위로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위촉대상에서 제외한다.
- ④ 제2항과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제1항 제2호부터 같은 항 제6호까지에 대하여는 대표변호사 및 진흥원의 법무업무를 총괄하는 변호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25조(법률고문 위촉 절차) ① 진흥원은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모 및 법률고문 위촉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고 한다)의 심사를 거쳐 법률고문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장인 부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4.07.30.> <개정 2026.07.21.>

③ 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26조(법률고문의 임기)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27조(법률고문의 해촉)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률고문이 임기 중이라 하더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2. 진흥원의 이익과 상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3. 진흥원의 업무상 비밀을 유출하거나 이권개입 등 직무를 부당하게 이용한 경우
4.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5. 기타 법률고문의 직위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제28조(법률고문 평가) ① 법무 담당부서의 장은 법률고문이 수행한 법률사무에 대한 진흥원 내부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설문조사 등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② 법무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법률고문의 연

임을 제한할 수 있다.

제29조(법률고문의 정보공개) 법무 담당부서의 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법률고문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의 결재를 득하여 2013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소송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소송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전에 체결된 소송위임계약은 이 규칙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부 칙(2016.5.3.)

제1조(시행일) 규칙은 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8.6.)

제1조(시행일) 규칙은 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7.16.)

제1조(시행일) 규칙은 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5.2.)

제1조(시행일) 규칙은 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07.30.)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09.06.)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6.07.21.)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8.8.6.> <개정 2021.7.16.>

소송위임계약서(민사, 행정 등)

위임인 한국콘텐츠진흥원

수임인 변호사 / 법무법인

[사건의 표시]

사건번호		사 건 명	
당 사 자		상 대 방	

위 당사자들은 위 표시 사건의 제_____심에 있어서의 사건처리에 관한 위임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목적]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수임인에게 위 표시 사건의 처리(이하 “위임사무”라 한다)를 위임하고, 수임인은 이를 수임한다.

제2조 [위임한계] 진흥원이 수임인에게 위임하는 위임사무의 한계는 당해 심급에 한하고, 파기환송된 사건이나 상소의 제기, 강제집행, 강제집행정지, 보전처분 등 부수적 절차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보전처분 사건의 경우, 이의사건 또는 취소사건은 별개의 위임사무로 한다.

제3조 [수권범위] 진흥원은 수임인에게 따로 작성하여 교부하는 위임장 또는 선임서에 적은 자격과 권한을 수여한다.

제4조 [수임인의 의무] 수임인은 변호사로서 법령에 정한 권리와 의무에 입각하여, 위임의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한다.

제5조 [자료제공 등]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자료 또는 조회한 사항에 대하여 진흥원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 [착수보수]

① 진흥원은 수임인에게 위임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착수보수로 금_____원 (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착수보수는 수임인이 위임사무에 관한 연구, 조사, 서면작성을 하는 등 위임사무에 착수한 후, 수임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당사자의 소의 부제기 또는 취하, 상소의 부제기 또는 취하, 청구의 포기, 인락, 소송상 화해, 조정, 소송물의 양도, 당사자의 사망 등의 경우에는 진흥원이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진흥원과

수임인의 협의 하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착수하기 이전이라도 수임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진흥원의 일방적인 위임계약 해지, 또는 제9조에 의한 위임계약의 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수임인이 입거나 입게 되는 손해 혹은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기로 한다.

④ 진흥원과 수임인이 합의로 위임계약을 해지 또는 수임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임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당시까지 수임인의 변호사 및 전문보조인력들이 진흥원을 위하여 일한 일체의 시간(수임을 위하여 상담하거나 연구한 시간 포함)에 수임인이 정하고 있는 시간당 보수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착수보수에서 공제하고 잔액이 있을 경우 이를 반환한다.

제7조 [성과보수]

가. 성과보수

위임사무가 판결, 재판상 내지 재판의 화해(화해권고결정 포함), 조정(조정에 갈음한 결정 포함) 등으로 성공한 때에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성과보수를 지급하기로 한다.

① 전부 승소한 경우 : 금_____원 (부가가치세 포함)

일부 승소한 경우 : 위 금액을 승소비율로 계산한 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② 상소심의 경우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상소심의 심판의 대상 전부를 기준으로 하여 승소 비율을 정한다.

나. 승소로 보는 경우 : 다음의 경우에는 승소로 보고, 위 가항에 정한 성과보수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① 수임인이 위임사무처리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투입한 후 진흥원이 임의로 청구의 포기 또는 인락, 소의 취하, 상소를 취하한 경우

② 수임인의 소송수행 결과로 인하여 상대방이 청구의 포기 또는 인락, 소의 취하, 상소를 취하한 경우(상대방이 이러한 사정으로 청구취지 또는 항소취지를 감축하는 경우에도 감축된 부분에 관하여 성공한 것으로 본다.)

③ 수임인의 소송수행 결과로 인하여 소송대상인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되거나 경정처분된 경우

④ 수임인이 위임사무 처리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투입한 후 진흥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임계약을 해지하거나, 제9조에 따라 수임인이 위임계약을 해지한 경우

다. 진흥원이 아무런 경제적인 이득 또는 기타 이득이 없이 청구의 포기, 소의 취하, 인락, 상소를 취하한 때에는 수임인의 노력 및 업무 수행 경과를 감안, 진흥원과 수임인이 상호 협의하여 성과보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비용부담]

①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예납금, 보증금은 그 전액을 진흥원이 부담한다.

제9조 [계약해지] 진흥원이 이 위임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임사무의 내용에 관하여 진술한 사실이 허위인 때에는, 고의가 아닌 경우라도 수임인은 이 계약을 해지하고 사임할 수 있다.

제10조 [통지의무] 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중요한 처리상황 및 그 결과를 진흥원에게 통지하고,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진흥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보수지급의 지체]

- ① 진흥원이 이 위임계약에 정한 비용 또는 보수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수임인은 위임사무에 착수하지 않거나 그 위임사무의 처리를 중단하거나 사임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경우 수임인은 신속하게 진흥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자료의 보관책임]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진흥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는 위임 종료시 진흥원에게 수령할 것을 통지한 후 3개월 내에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수임인은 이를 임의로 폐기할 수 있다.

제13조 [지급보장]

- ① 수임인은 이 위임계약에 정한 비용 또는 보수의 지급을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진흥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수임인은 진흥원이 제1항의 비용 또는 보수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련하여 보관하게 된 금전, 문서 또는 자료 등을 유치하거나 상계처리할 수 있다.
- ③ 전항의 경우 수임인은 신속하게 진흥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인장조각] 이 위임계약의 수행 상 필요한 경우, 수임인은 진흥원 또는 당사자의 인장을 조각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수임인은 사후에 인장조각 및 사용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 [비밀유지] 수임인은 업무상 취득한 진흥원의 모든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업무수행상 필요하거나 법적으로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 이외에는 진흥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6조 [민법과의 관계] 기타 위임사항에 관하여 이 위임계약서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상 위임에 관한 규정이 정한 바에 의한다.

제17조 [복대리인 선임] 수임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흥원에 사전에 통보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약사항**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를 2통 작성하고, 위임인과 수임인이 각 1통씩 보관한다.

한 국 콘 텐 츠 진 흥 원
위원장 ○ ○ ○ (인)

주 소

사업자
등록번호

법무법인 ○ ○ ○ ○
대표 ○ ○ ○ (인)
담당 ○ ○ ○ 변호사

주 소

사업자
등록번호

[별지 제1의2호 서식] <신설 2018.8.6.> <개정 2021.07.16.>

소송위임 표준계약서(형사)

위임인 : 한국콘텐츠진흥원

수임인 : 변호사 / 법무법인

[사건의 표시]

사건번호		사 건 명	
당 사 자		상 대 방	

“진흥원” 이 “수임인” 에게 위임하는 위임사무는 수사단계인 경우 (경찰,검찰), 위 표시 사건의 제 심에 있어서의 사건처리에 관한 위임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 적】진흥원은 수임인에게 위 표시 사건의 처리(이하 “위임사무” 라 한다)를 위임하고, 수임인은 이를 수임한다.

제2조【수임인의 의무】수임인은 변호사로서 법령에 정한 권리와 의무에 입각하여 위임의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자료제공 등】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자료 또는 조회한 사항에 대하여 진흥원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착수보수】

① 진흥원은 수임인에게 위임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착수보수로 금_____원 (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착수보수는 수임인이 접견, 위임사무에 관한 연구, 조사, 서면작성을 하는 등 위임사무에 착수한 후에는, 수임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의 취하, 고소의 취하, 당사자의 사망 등의 경우에는 진흥원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③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착수하기 이전이라도 수임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진흥원의 일방적인 위임계약 해지, 또는 제7조에 의한 위임계약의 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수임인이 입거나 입게 되는 손해 혹은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기로 한다.

④ 진흥원과 수임인이 합의로 위임계약을 해지 또는 수임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임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당시까지 수임인의 변호사 및 전문보조인력들이 진흥원을 위하여 일한 일체의 시간(수임을 위하여 상담하거나 연구한 시간 포함)에 수임인이 정하고 있는 시간당 보수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착수보수에서 공제하고 잔액이 있을 경우 이를 반환한다.

제5조【비용부담】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예납금, 보증, 등사료, 여비 기타 필요한 실비는 그 전액을 진흥원이 부담한다.

제6조【계약해지】 진흥원이 이 위임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임사무의 내용에 관하여 진술한 사실이 허위인 때에는, 고의가 아닌 경우라도 수임인은 이 계약을 해지하고 사임할 수 있다.

제7조【통지의무】 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중요한 처리상황 및 그 결과를 진흥원에게 통지하고,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진흥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보수지급의 지체】

① 진흥원이 이 위임계약에 정한 비용 또는 보수의 지불을 지체한 때에는, 수임인은 위임사무에 착수하지 않거나 그 위임사무의 처리를 중단하거나 사임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 수임인은 신속하게 진흥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자료의 보관책임】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진흥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는 위임 종료시 진흥원에게 수령할 것을 통지한 후 3개월 내에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수임인은 이를 임의로 폐기할 수 있다.

제10조【지급보장】

① 수임인은 이 위임계약에 정한 비용 또는 보수의 지급을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진흥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수임인은 진흥원이 제1항의 비용 또는 보수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련하여 보관하게 된 금전, 문서 또는 자료 등을 유치하거나 상계처리 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경우 수임인은 신속하게 진흥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인장조각】 이 위임계약의 수행 상 필요한 경우, 수임인은 진흥원 또는 당사자의 인장을 조각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수임인은 사후에 인장조각 및 사용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비밀유지】 수임인은 업무상 취득한 진흥원의 모든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업무 수행상 필요하거나 법적으로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 이외에는 진흥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3조【민법과의 관계】 기타 위임사항에 관하여 이 위임계약서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상 위임에 관한 규정이 정한 바에 의한다.

***특약사항**

제〇〇조

제〇〇조

제〇〇조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를 2통 작성하고, 진흥원과 수임인이 각 1통씩 보관한다.

200 . . .

한 국 콘 텐 츠 진 흥 원
위임인
원장 ○ ○ ○ (인)

주 소

사업자
등록번호

법무법인 ○ ○ ○ ○
수임인
대표 ○ ○ ○ (인)
담당 ○ ○ ○ 변호사

주 소

사업자
등록번호

[별지 제2호 서식]

소 송 위 임 장	
사 건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다음 표시 수임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다음 표시 권한을 위임한다.	
수 임 인	
위임내용	1. 일체의 소송행위 1. 화해, 청구의 포기 및 인락 1. 반소, 항소 및 상고의 제기 또는 취하 1. 변제의 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 1. 대리공탁 및 공탁물과 그 이자의 반환청구와 수령 1. 담보취소 신청에 관련된 일체의 행위 1. 복대리인의 선임
20 년 월 일	
위임인 주소 :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 (인)	
귀중	

법률검토 요청서

제목			
담당자(부서)		연락처	
질의사항			
참고자료			